

조선시대 제주도 신분 구조 연구 시론

조 성 윤*

1

조선 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으며, 양반·중인·상민·노비·천민 등 신분에 따른 차별은 엄격하였다. 신분제도는 혈연과 세습에 기초하여 형성되며, 전통사회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등을 두는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 경제제도(지주전호제, 조세제도)와 주자학적 유교사상과 함께 조선왕조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신분제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설정하여 활발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역사를 한국역사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해하려 할 때는 제주도 지역 사회에서 신분제가 어떤 식으로 정착하였고, 또 어떤 형태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작업이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제주도 역사 연구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제주도사 연구의 현황에 관한 연구사를 분야 별로 분류해 보면 資料의 解題와 翻譯, 影印本 出刊 및 중요 人物(思想)연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政治, 漂到, 民亂 분야가 20% 이상을 차지하여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 반면, 사회경제 분야는 거의 미개척 상태로서, 특히 신분구조에 관한 연구는 단 한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주도 신분구조의 연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는 조선시대 전체적인 신분구조의 기본 틀을 전제

* 제주대

하여 두고 그 안에서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아갈 때 올바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단순히 法制 上의 신분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현실의 신분 구조를 이해하려면 兩班—中人—常民(平民)—賤民(奴婢)들 간의 역학 관계를 입체적으로 규명해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신분 집단의 존재 양태를 역사적 경험에 따라 각각 체계화하면서 이들 각 신분 집단의 모습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다음 단계로 신분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단계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주도 지방의 신분제를 검토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제주도 지방에서는 언제쯤 신분제가 정착하는가? 다른 지방과는 달리 토착 양반 집단의 관직 진출 기회가 극히 적었던 제주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양반 집단은 과연 자신들의 양반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었는가? 제주도의 토착 양반은 육지 다른 지방과 비교해 볼 때 지역 사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가? 제주도의 鄉吏 집단을 비롯한 中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 兩班, 中人, 平民 간에 혹시 通婚圖이 다른 지방과는 달리 개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제주도 지방의 奴婢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물론 이 발표에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다만 제주도 지방의 신분제 분석을 위한 예비적인 검토를 통해 대체적인 윤곽을 잡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시론적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될 것이다.

2

조선시대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를 과연 어떤 資料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시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역시 戶籍臺帳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官에서 縣 또는 面 단위로 정리한 戶籍臺帳을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도 해방 직후까지 남아 있던 자료의 대부분이 4·3 당시 불에 타버렸을 것이다. 다만 官에서 정리한 것이 아닌 마을 별로 비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臺帳**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戶籍臺帳 보다는 자료의 가치가 멀어지지만 차선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戶口單子는 大靜縣廳 부근의 마을과 도순, 태홍, 온평, 화북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충분히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이들 호구단자를 수집해서 단편적으로나마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쓴다면 戶籍臺帳이 남아 있지 않은 지역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물론 『朝鮮王朝實錄』, 『備邊司騰錄』, 『承政院日記』 등의 官撰 史料와 현재까지 남아있는 몇 종류의 邑誌와 『耽羅啓錄』 등의 官廳 文書, 그리고 각종 文集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자료에 나타난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윤곽을 살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3

이제 현재 남아 있는 戶籍臺帳 가운데 일부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실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 隆熙二年 戊申 一月 日 新豐里 戶籍單子(1908년)(吳文福 先生 所藏)
- 大靜郡 稷達里 丁卯式 戶籍中草 同治六年(1867년)(濟州大 中央圖書館 所藏)

新豐里 자료에는 모두 127戶, 稷達里 호적에는 30戶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新豐里 자료는 마을 전체를 기록한 것이 분명한 반면, 稷達里 자료는 마을 전체의 戶를 모두 기록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개의 자료는 戶口單子를 모아 이를 바탕으로 官廳에서 작성한 정식 戶籍臺帳이 아니라 旌義縣 新豐里와 大靜縣 稷達里의 戶籍 만을 따로 기록해 놓은 자료로서 官廳의 戶籍臺帳을 筆寫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1908년의 新豐里와 1867년의 稷達

〈表 1〉 두 마을의 職役을 통한 身分 分類

職役	葉音	新 豊 里		繩 達 里		總 計	比率(%)
		人員	比率(%)	人員	比率(%)		
兩班A	幼學	53	13.3	1	0.6	54	
	學生	38	9.6	4	2.6	42	
	儒生	8	2.0			8	
	品官	3	0.8	18	11.6	21	
	閑良	2	0.5			2	
	司果			3	1.9	3	
小計		104	26.2	26	16.8	130	23.5
兩班B	座首	8	2.0	1	0.6	9	
	別監	35	8.8			35	
	訓長	2	0.5	1	0.6	3	
	齊長	9	2.3			9	
	掌議	63	15.8			63	
	免講	1	0.3			1	
小計		118	29.7	2	1.2	120	21.7
兩班C	通政	2	0.5			2	
	德郎	1	0.3			1	
	資望	1	0.3			1	
	副尉	1	0.3			1	
	判官	1	0.3			1	
	青衿	1	0.3			1	
折衝將軍							
中人	兼五衛將老職*	1	0.3			1	
	展力副尉			1	0.6	1	
	兼司僕			1	0.6	1	
	小計		8	2.0	2	1.2	10
	戶長	87	21.9	20	12.9	107	
	貢生	51	12.8	5	3.2	56	
校記作	生生	3	0.8			3	
	官吏			5	3.2	5	
	吏			3	1.9	3	

兵	吏	4	1.0				4	
兵	房	3	0.8				3	
由	吏	2	0.5				2	
假	率			10	6.5		10	
業	武	1	0.3	6	3.9		7	
	小計	151	38.0	49	31.6	200	36.2	
平	主事	1	0.3				1	
	執事	2	0.5	6	3.9		8	
	書員			16	10.3		16	
	將官	2	0.5	8	5.2		10	
	城將			4	2.6		4	
	千把	1	0.3	6	3.9		7	
	摠摠	2	0.5	2	1.3		4	
	鐵撫	8	2.0	17	11.0		25	
	助防	1	0.3				1	
	旗旗			2	1.3		2	
	群營			4	2.6		4	
	番漢			1	0.6		1	
	牧漢			3	1.2		3	
	五丁頃			1	0.6		1	
	營使			1	0.6		1	
	郡使			2	1.2		2	
	遼防			2	1.2		2	
	小計	17	4.3	76	49.0	95	17.2	
	計	398	100.1	155	99.8	553		

* 老職 : 老職 通政嘉善嘉義大夫 同知中樞府事

里 戶口의 실태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해 주고 있음은 인정할 수 있겠다. 戶籍 記載 方式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稽達里의 것은 舊戶籍이고 新豐里의 것은 新戶籍이다. 실제로 新豐里 자료에는 각 호마다 가옥의 규모를 기재해 놓고 있어 新戶籍 記載 方式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구호적과 신호적 기재 방식을 절충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戸主와 戸主의 父, 祖, 曾祖의 職役 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新豐里 戶籍은 戸主와 戸主의 父, 祖, 曾祖, 外祖, 妻, 그리고 그밖의 가족을, 積達里 戶籍은 戸主와 戸主의 父, 祖, 曾祖, 外祖, 그리고 妻와 妻의 父, 祖, 曾祖, 外祖, 그리고 그밖의 가족을 기재하여 서로 기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공통된 부분 만을 취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둘째로 外祖와 家族은 通婚圈을 검토할 때 주로 분석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는 점, 세째로는 職役과 身分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보려면 家系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이 자료의 작성 시기가 1867년과 1908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에 반영된 身分—職役 관계는 이미 조선 말기, 즉 중세 사회 해체기로 접어든 제주도 사회의 것이라는 점이다.

표는 각 職役들을 兩班—中人—平民—奴婢의 각 身分에 해당되는 것 끼리 둑어 작성한 것이다. 어떤 職役을 어떤 身分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아직도 정설이 없으며, 각 身分 사이의 중간 지대가 상당히 존재하며 사회 변동 과정에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여기서는 四方博, 金容燮, 武田幸男의 논문의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고 그들이 조사했던 大邱, 尚州, 鎮海 지방의 身分—職役 관계와 대조해 본 것이다. 표의 兩班 범주를 셋으로 나눈 것은 실제로 兩班으로 인정 받는 경우와 實職이 아닌 贈職, 老職을 구분하고, 육지 다른 지방과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兩班 A범주는 일반적으로 양반으로 인정 받는 경우이고, 兩班 B범주는 贈職, 老職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이며, 兩班 C 범주는 육지 다른 지방에서는 戶籍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 표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제주도에서의 각 身分의 특성을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보자. 新豐里의 경우 兩班이 A, B, C범주를 합쳐 57.9%, 中인이 38.0%인 반면 平民은 4.3%에 지나지 않는다. 積達里의 경우는 兩班이 19.2%, 中人 36.2%이고 平民이 49%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新豐里는 전형적인 兩班 중심의 마을, 또는 兩班 집중

거주지이며, 稿達里는 平民 집중 거주지라고 할 수 있다. 마을 별로 身分 상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각 身分 别 거주 지역의 분리라는 일반적인 원칙이 관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중산간 마을은 兩班, 해안 마을은 상놈이 주로 살았다”는 제주도의 관행과 관련지워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1) 兩班 : 조선시대의 兩班身分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官職과 財產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이 중앙 관료직에 진출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물론 특별히 제주도민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科舉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험에 합격하여 명예를 얻는 것으로 그칠 뿐 실제로 등용되어 제주도를 떠나 한양 또는 다른 지방에서 관료생활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實職을 얻었다면 그것은 대부분 濟州島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官職이었다.

제주도의 경우는 다른 지방과 달리 조선 초기까지 毀羅國 아래의 전통적인 土着 支配勢力인 豪族이 강력한支配力を 행사하고 있었고 이들을 土官職으로 임명하는 관례가 있었고, 따라서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특수 官職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를 역임한 자들을 兩班으로 간주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土官職이 많이 부여되던 시기인 조선 초기에 鄉校 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는 기록과 제주인들이 儒學에 전념하기보다는 활쏘기를 더욱 즐긴다는 기록이 朝鮮王朝實錄에 자주 보이는 것은 土官職을 얻는 것으로도 제주 지방에서 지배집단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土官職이 세습적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儒學을 공부하고 과거를 치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데에서 연유한다.

물론 土官職은 朝鮮中期로 가면서 사라지는데, 이에 따라 豪族 세력은 점차 科舉라는 공식적인 관문을 통과해야만 兩班으로 인정받는 중앙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해 갈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부터는 鄉校가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으며, 鄉廳의 職도 비록 중앙 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정치에 참여한다는 점 때문에 중요하게 평가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科舉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實職을 받지 못한 자들과 科舉에 응시하지는 않았으나 兩班 家門 출신의 子弟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鄉校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朝鮮後期를 지나 말기에 이르러서도 평민 가운데 상승하는 부농 계층이 鄉權에 도전해오던 육지 다른 지방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이들이 鄉職(座首, 別監)과 鄉校의 職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표의 兩班 B 범주에 속한 직역들 가운데 訓長, 齊長, 그리고 掌議는 鄉校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고, 座首와 別監은 鄉廳의 중요 직책이다. 이것들은 大邱, 尚州, 鎮海 지방에서는 戶籍에 자신의 職役을 표시할 때 전혀 職役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제주도의 경우 이것을 중요한 兩班임을 상정하는 職役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상은 매우 특이하다. 어쩌면 그만큼 제주 兩班의 경우 중앙 관직을 얻을 기회가 적고 科舉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鄉校에서의 직책과 鄉職을 중요시 여기고 신분 유지의 수단으로 파악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鄉廳과 鄉校에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특권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兩班 C 범주에 포함된 職役은 중앙 정부로부터 부여받는 것들이지만, 대부분 實職이 아닌 贈職 또는 老職이라고 생각된다. 조선후기 이래 중앙정부가 재정 확보책의 일환으로 발행한 空名帖을 샀거나, 나이 많은 노인에게 정부가 내려준 명예직인 것이다.

또한 新豐里 戶籍에는 新戶籍의 기재 방식에 따라 職과 業을 구분해서 記載하고 있는데, 우리가 兩班으로 분류하는 자들이 평민으로 분류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業을 ‘農’이라 기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는 집의 규모도 1間~3間 사이로 3間을 넘는 규모의 집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들은 농업이 절대적인 중심을 차지하는 육지와는 달리 농업, 목축업, 수산업 등 여러 부분의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따라서 육지 다른 지방과는 달리 地主佃戶制가 발달하지 못했고, 양반의 부의 기반이 토지 소유 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형태(보기를 들어 牛馬의 소유, 유지와의 교역 독점, 향적 독점)를 통한 중간 착취에의 참여)를 띠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부를 향유하는 자는 소수였을 것이고 대부분의 양

반은 위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業을 ‘農’이라고 표시하는 독립 자영농으로, 그리고 약간의 牛馬 사육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여기서 兩班으로 분류하는 집단이 대부분 일반 평민들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별로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2) 中人: 표에는 중인으로 鄉吏職이 두 가지가 나온다. 이 가운데 兵吏는 자주 보이는 것이지만, 作吏라는 표현은 다른 지방 호적에는 보이지 않는 직역이다. 집작전대 作吏란 鄉吏 일반을 표시하는 막연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도에서는 兩班 儒林 집안과 中人 衙前 집안을 철저히 구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衙前 집안 출신은 아무리 財力이 있어도 鄉校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제주도처럼 다른 조세 보라도 각종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貢物 上納이 주종을 이를 경우 중간 관리층인 鄉吏들의 자의적인 수탈 가능성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른 지방과는 달리 관직 진출의 기회가 극히 적었던 만큼 양반 가운데 하위 부분이 鄉吏로 들어가는 것을 나름대로 관직 진출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향리가 되면 양반으로부터는 단절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平民: 표에 나오는 戸長, 主事, 執事, 書員이라는 직역은 다른 지방의 戶籍에 역시 나오지 않는다. 특히 戸長은 平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主事, 執事, 書員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鄉廳의 하위 실무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城將, 千摠, 把摠, 鎮撫, 營旗牌, 旗手는 군대 하위직책으로 다른 지방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반면 群頭와 營畠漢은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직책이다. 群頭는 牧場에서 牛馬를 牧養하는 책임을 맡은 監牧官 밑의 실무 직책인데, 초기에는 監考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世宗 때 群頭로 改稱되었다(『世宗實錄』 世宗 17년 3월 임오). 群頭와 群副 밑에는 상당한 수의 牧子가 있었는데, 牧子는 일종의 役으로 한 번 맡겨지면 종체로 벗어날 수 없는 고역이었다. 『中宗實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國馬를 看養하는 牧子는 16세에 定役하고

60세에 免役함이 常例인데, 役을 끝겨 벗거나 관장한 바를 여태 轉換하지 못합니다. 故失馬의 疵으로 家產을 蕩盡하여도 徵納할 도리가 없으니 그 폐단은 장차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中宗 8년 12월 경신). 營畠漢은 屯田을 관리하던 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닌가 싶다. 평민들의 경우 육지와의 상업 활동, 양태를 비롯한 각종 수공업 활동에 다양하게 종사하고 있었고, 육지 와는 달리 대부분의 兩班과 별차른 차별상을 갖지 않은 채 생활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4) 奴婢: 위의 두 마을에는 전혀 奴婢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육지 마을에서의 일반적인 양상과는 매우 다르다. 물론 新豐里의 자료는 甲午改革 이후의 것이므로 그 전에 있었더라도 나타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奴婢 출신은 記載 方式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新豐의 경우 奴婢는 없었던 듯하다. 奴婢는 中世 사회의 富의 기반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존재인데, 두 마을에 奴婢를 소유한 사람이 없고 또 奴婢가 獨立戶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위의 자료 만으로는 노비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으므로 다른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겠다.

旌義縣 孤村面 保閑里 慶州 金氏 집안의 1756년에서 1912년에 이르는 기간의 準戶口와 戶口單子가 每 式年마다 작성되었고, 그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50여매가 된다. 이 집안에 奴婢가 최고 22명까지 記載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지금까지 간략히 정리해 본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막 시작한 제주도 신분 구조에 관한 연구작업의 한 부분이며 초안이다.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아직 근거 자료도 없이 제시된 가설로 구성되어 있고, 또 후반부에 제시한 자료도 조선 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선시대 제주도의 신분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어립없는 자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발표는 토론을 위한 문제 제기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좀더 자료를 모으고 깊이 있는 해석을 가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해주기 바란다.